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금 명세서 서면 교부 〉
■ 전종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337호)

2026. 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화 실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금 명세서 서면 교부	2

I. 제안경위

2026년 3월 9일 전종덕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3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별도의 퇴직금 명세서 교부 규정이 없어 퇴직근로자들이 그 계산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고, 퇴직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퇴직금 명세서를 요구하여도 법적 강제력이 없어 채불 관련 분쟁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임금명세서 외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퇴직금 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3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금 명세서 서면 교부(안 제48조제3항 신설)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 외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퇴직금 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규정함(안 제48조제3항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 ② (생략) <u><신설></u>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 외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퇴직금 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u>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사용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의 서면 교부의무를 부여하고,¹⁾ 이를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²⁾

또한 현행법 제34조³⁾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경우,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고,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퇴직금 명세서 등 관련 규정은 없음.

이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에 대한 상세 계산 내역

-
- 1)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 2) 제11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제9항, 제76조의3제2항·제4항·제5항·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 3) 제34조(퇴직급여 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제1항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사용자에게 퇴직금 명세서의 서면 교부의무를 부과하여 퇴직 근로자가 퇴직금 산정 내역과 계산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보임. 특히, 퇴직금의 후불적 임금의 성질⁵⁾을 고려할 때 개정안을 통해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 보호가 강화될 수 있는 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현재 퇴직금 등 퇴직급여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종전의 근로기준법은 퇴직금제도를 직접 규율하고 있었으나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정 및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퇴직급여제도에 대해서는 특별법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규율하고 있음. 이를 고려할 때 퇴직금 명세서 교부 의무를 신설한다면 「근로기준법」보다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퇴직금의 지급 등⁶⁾ 관

5)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는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기간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할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퇴직금은 본질적으로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이다…

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제1항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련 규정을 이미 마련하고 있으므로 퇴직급여제도 관련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최근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⁷⁾ 등 제도 개편으로 인한 사용자 부담이 있음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540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7)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및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에 관한 노사정 공동선언, 2026.2.6.